

#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일부 개정 조례안



성 북 구  
(건 축 과)

#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일부 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183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3년 9월 일  
제출자 : 성북구청장

## 1. 제안이유

법률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한 상위법령을 반영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가.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(제8조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 3항 및 4항

### 제9조(회계의 구분)

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협의사항

1) 기획예산과 :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(원안가결)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 : 2023. 8. 17. ~ 2023. 9. 6.(20일간)

- 입법예고 결과 : 의견없음

2) 신·구 조문대비표 : 별첨

3) 비용추계 등 자료 작성 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별첨

4) 인권/부패/성별/아동 영향평가 결과

- 인권영향평가 결과 : 원안동의

- 부패영향평가 결과 : 원안동의

- 성별영향평가 결과 : 개선사항 없음

- 아동영향평가 결과 : 대상아님

5) 법제심사 결과 : 검토의견 반영(편집용지 여백 수정)

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(존속기한) 중 “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”를 “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”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8조(존속기한)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<b>2023년 12월 31일까지</b>로 하되,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 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</p>	<p>제8조(존속기한)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<b>2028년 12월 31일까지</b>로 하되,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 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</p>

#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 1. 비용발생 요인

-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사항으로 비용 발생 요인 없음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1조 제2항 제1호  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

## 3. 미첨부 사유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함.

## 4. 작성자

도시관리국 건축과장 고 병 연